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28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3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3
나.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공제율 상향 (조지연의원안)	15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지연의원안)	22
2.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27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30
가. 제도 개요	30
나.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34

I. 개요

1.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13.

(3) 회 부 일 : 2026. 4.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

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

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6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핵심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6. 2. 27.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AI 컴퓨팅을 위한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의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분야	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분야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6. 2. 27.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⁴⁾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4)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공제율 상향(조지연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 7.5¹₁</td><td>10</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²₂</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³₃</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⁴₄</td><td>3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₁ (~3년)7.5%, (4년~)5% 2₂ (~3년)9%, (4년~)6% 3₃ (~3년)20%, (4년~)15% 4₄ (~3년)25%, (4년~)2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₁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₃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₄	30	☐ 녹색제품 세액공제율 상향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 7.5¹₁</td><td>10</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²₂</td><td>12</td></tr><tr><td>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²₂</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³₃</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⁴₄</td><td>30</td><td></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₁ (~3년)7.5%, (4년~)5% 2₂ (~3년)9%, (4년~)6% 3₃ (~3년)20%, (4년~)15% 4₄ (~3년)25%, (4년~)20% ○ 적용기한: 2029. 12. 31.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₁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₃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₄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₁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₃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₄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₁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₂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₃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₄	30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4조) ○ 2025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7</td><td>12</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8</td><td>14</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¹₁</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²₂</td><td>3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₁ (~3년)20%, (4년~)15% 2₂ (~3년)25%, (4년~)2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₂	30	☐ 녹색제품 세액공제율 상향 ○ 2026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7</td><td>12</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8</td><td>14</td></tr><tr><td>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³₃</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¹₁</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²₂</td><td>30</td><td></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₁ (~3년)20%, (4년~)15% 2₂ (~3년)25%, (4년~)20% 3₃ (~3년)9%, (4년~)6%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³ ₃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₂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₂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³ ₃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₂	30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26. 12. 31.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통합투자세액공제: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지연의원안 2026. 4. 13. 발의(의안번호 18285)

□ 개정안은 내국인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제품⁵⁾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해당 녹색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에 대하여 3%(대기업), 6%~9%⁶⁾(중견기업), 12%(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6)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9%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비용에 대하여 3%(대기업), 6%~9%⁷⁾(중견기업), 12%(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⁸⁾으로서,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⁹⁾,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¹⁰⁾, ③

7)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¹¹⁾, ④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이 이에 해당함.

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녹색제품 현황]

구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2개 제품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3개 분야
인증제품 수	4,881개 업체 18,659개 제품 (’25.10월말 기준)	349개 업체 1,371개 제품 (’25.10월말 기준)	359개 업체 413개 품목 (’25.10월말 기준)
인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2025. 12.

□ 개정안은 이러한 녹색제품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녹색제품의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녹색제품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녹색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¹²⁾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기준 국가기관 5,383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 9,541억원, 교육자치단체 1조 1,147억원 등 총 4조 5,755억원 규모의 녹색제품이 구매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의 법정 구매율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율은 100%라고 설명함.

둘째, 개정안은 2026년도 녹색제품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제품 시설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2026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셋째, 기술 분야별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져 과도한 조세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기술 분야를 ① 일반, ② 신성장·원천기술 및 ③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분야 제외), ④ 반도체 분야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술 분야별 공제율 및 공제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매년 지원제도가 복잡해지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공제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지연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율					- 유형별 공제율(조지연의원안)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₁	10	10	일반		1	5, 7.5 ¹ ₁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₁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₁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₁	25		<u>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u>		<u>3</u>	<u>6, 9²₁</u>	<u>12</u>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₁	3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₁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₁ (~3년)7.5%, (4년~)5% 2 ₁ (~3년)9%, (4년~)6% 3 ₁ (~3년)20%, (4년~)15% 4 ₁ (~3년)25%, (4년~)2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₁ (~3년)7.5%, (4년~)5% 2 ₁ (~3년)9%, (4년~)6% 3 ₁ (~3년)20%, (4년~)15% 4 ₁ (~3년)25%, (4년~)20%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2025년도 투자분):					- 공제율(2026년도 투자분, 조지연의원안):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u>녹색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u>		<u>3</u>	<u>6, 9³₁</u>	<u>12</u>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₁	3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₁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₁ (~3년)20%, (4년~)15% 2 ₁ (~3년)25%, (4년~)2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₁ (~3년)20%, (4년~)15% 2 ₁ (~3년)25%, (4년~)20% 3 ₁ (~3년)9%, (4년~)6%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6. 12. 31. (조지연의원안)</u> ○ 시행일: 공포한 날

* 조지연의원안 2026. 4. 13. 발의(의안번호 18285)

☐ 개정안은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조정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2025년 투자분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2%p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2025년) 공제율 비교]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u>5 → 7</u>	<u>10 → 12</u>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u>6 → 8</u>	<u>12 → 14</u>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분야	20		30	

주1: 화살표로 변경된 공제율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임

주2: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는 미반영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년에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리고 정부는 2024년 1월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정책과제가 포함되었지만 2024년 세법개정 당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음.

이후 2025년 3월 세법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음.

-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도입된 바 있으며, 3차 도입 시 7회 연장, 4차 도입 시 4회 연장, 5차 도입시 12회 연장, 6차 도입 시 1회 연장이 이루어졌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 연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82년 (1년)	85.6~86년 (1년반)	89.7~94년 (5년반)	97.6~00.6 (3년)	01~10년 (10년)	23~25년 (2년)
		7회 연장	4회 연장	12회 연장	1회 연장

-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2023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던 2024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24년에도 연장될 경우 일반적 자산에 대하여 40.0%가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증가 계획금액은 6억 5,222만원, 증가비율은 25.0%로 나타났음.¹³⁾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를 조기에 늘리도록 2023년에 한해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예외적으로 2025년 말까지 연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13) 기획재정부,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책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제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관행적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재연장 기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과거에도 5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년에 도입된 후, 상시적 연장을 통해 2010년까지 운영되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있음.

둘째, 납세의무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¹⁴⁾,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2. 공제금액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2.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9 신설)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 금액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공제한도: 없음 ○ 적용기한: 2029. 12. 31. ○ 최저한세 적용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부터 적용

* 조지연의원안 2026. 4. 13. 발의(의안번호 18285)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9년 말까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의 녹색제품¹⁵⁾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개정안은 녹색제품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녹색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녹색제품 구매 유인 확대를 통해 녹색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할 수 있고,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녹색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¹⁶⁾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기준 국가기관 5,383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 9,541억원, 교육자치단체 1조 1,147억원 등 총 4조 5,755억원 규모의 녹색제품이 구매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의 법정 구매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율은 100%라고 설명함.

둘째, 상품의 원재료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므로 추가적인 세액 공제는 과도한 지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녹색제품에 한하여 구매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셋째, 현행법상 기업의 중간재 구매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 제도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¹⁷⁾,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및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17)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❸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❹ 대중교통	40%		도서 등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체육시설이용 료 등	30%		자녀 등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1차례 연장되어 2028년 말 일몰 예정임.¹⁸⁾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¹⁹⁾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²⁰⁾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

18)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 ⇒ 2028. 12. 31. 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20)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서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2025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조 884억원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859억원, 2026년에는 4조 6,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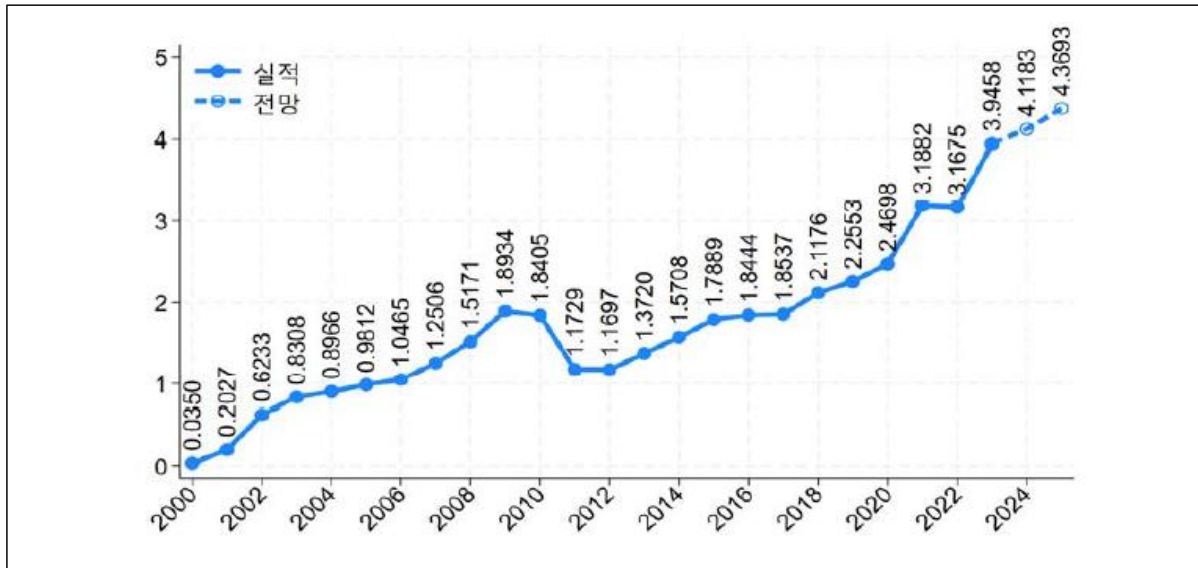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0,884	43,859	46,2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 9.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신 설>		- <u>녹색제품구매분</u>	<u>30%</u>
- 대중교통이용분	4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지연의원안 2026. 4. 13. 발의(의안번호 18285)

☐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녹색제품구매분을 추가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사용금액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²¹⁾ 및 제2조의2²²⁾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결과²³⁾에 따르면 녹색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표지 제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선 구매 의향은 93.8%였으나,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민간 소비자는 40.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 의향이 실제 민간 소비로 이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친환경 제품 구매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품 구매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제품 대비 가격이 비싸서’의 경제적인 사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2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3) 「2025년 친환경 생활·소비 국민 인지도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1.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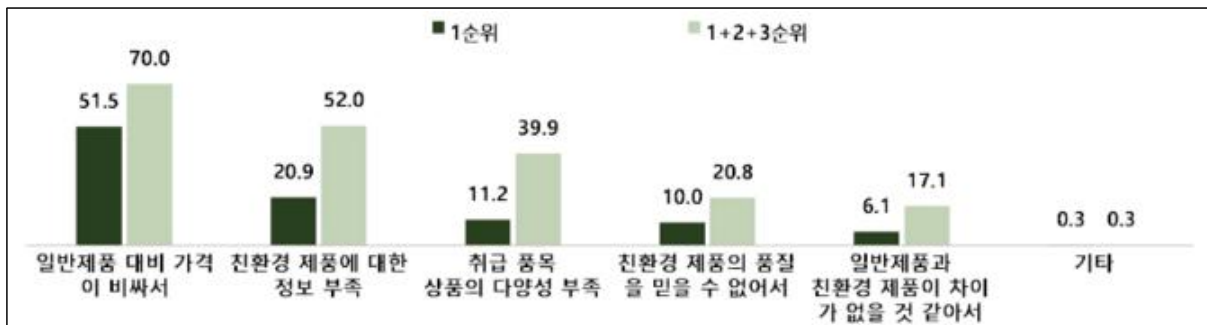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구매 경험	87.8	86.3	82.9	75.2	65.8	40.9

주: 2024년의 경우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지 않음

자료: 각 년도 친환경 생활·소비 국민 인지도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제품 미구매 사유(2023년 기준)]

(단위: %)



자료: 「2023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 인지도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와 같이 녹색제품에 대한 민간 소비가 저조하고, 그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해 30%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는 경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²⁴⁾ 결과, 문화·체육

지출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도입으로 인해 문화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대상 확대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사업장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구매 장려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도 제시될 수 있으며, 녹색제품의 경우 구매처가 다양하고 구매건수가 매우 많을 수 있어 녹색제품 구매분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2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